

사건번호	2017나2493	사건명	손해배상(지)
제1심판결	2016가합579321	심판결과	기각
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광폭화물 운송용 차량의 적재프레임 가변장치
선고일	2018. 12. 20.	선고결과	기각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보조참가인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것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광폭화물적재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구한다.

그러나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차량에 설치된 가변장치들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보조참가인 등과 이 사건 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조참가인 등은 다시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명의자들과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차량의 운행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출입허가증이 피고 명의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차량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차량을 이용하여 포스코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이상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보조참가인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것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서 규정한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였거나 제3자의 실시행위에 위법하게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키워드: 침해, 운송계약, 가변장치,

사건번호	2017허6774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16당3106	심판결과	기각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전기 헤어롤
선고일	2018. 12. 20.	선고결과	인용

압판의 양측면에 양 갈래로 분기되면서 형성된 지지바가 추가로 구비된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어 특허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2016. 10. 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6당3106)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선행발명 1은 블로그 게시물 등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인 2016. 3. 28.경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선행발명1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사에 반한 공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발명자에게 있는 바, 2016. 3. 23.부터 2016. 4. 3. 까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스타롤 제품에 대한 구매 후기 및 이에 첨부된 사진들에 나타난 스타롤 제품의 제조원은 피고, 판매원은 시슨드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을 비롯한 스타롤 제품은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종료일 전에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의사에 반하여 실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발명과 선행발명1을 대비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9항 발명은 각 구성요소가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다만 이 사건 제10항 발명 관련, 압판의 양측면에 양 갈래로 분기되면서 형성된 지지바가 추가로 구비된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지지바 사이에 절곡핀이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서 선행발명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1에는 가압판이 양 갈래로 분기된 지지바의 구성이 없이도 절곡 LED에 구매받지 않고 설치될 수 있는 구성이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원공급부는 지지바와는 무관하게 제어보드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반드시 지지바에 의해 후단이 지지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경우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그와 같은 구성을 용이하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제10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키워드: 헤어롤, 등록무효, 스타롤, 신규성, 진보성

사건번호	2018허3925	사건명	거절결정(특)
심판번호	2016원5061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조혈암 및 증식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고정 약물 비율
선고일	2018. 12. 20.	선고결과	기각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하여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첨심사관 및 특허심판원은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거절결정 및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기각한바, 진보성 부정여부를 본다.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기 조성물의 투여용량, 투여용법을 환자에게 8시간 이내에 정맥 투여하고 32-134mg/m²의 시타라빈을 제공하며 제1일의 제1 투여 단계, 제3일의 제2 투여 단계 및 제5일의 제3 투여 단계로 한정된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는 사항과 우선일 당시 알려져 있던 기술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투여용량과 투여용법은 시타라빈 대 다우노루비신의 약리효과가 온전히 유지되면서 독성이나 부작용이 최소화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와 같이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임상시험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특정한 투여용량·투여용법을 도출해 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지된 의약품질의 약리효과는 온전히 유지하고 투약의 편의성을 증진하면서 독성이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투여용량이나 투여용법을 찾는 것은 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투여용량, 투여주기 등 투여방법을 최적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창작능력 범위 내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정하고 있는 '32-134mg/m² 시타라빈'의 범위와 '1일, 3일 및 5일'의 투여주기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키워드: 거절결정, 투여방법과 투여용량, 조혈암, 진보성

사건번호	2018허4522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16당3023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안정성과 열효율이 향상된 이중조리용기
선고일	2018. 12. 20.	선고결과	기각

보열공간의 높이와 부피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피고 발명의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는 보열공간과 측면유로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보열공간의 경계나 범위를 알 수 없고, 보열공간의 높이나 부피를 수치로 측정하여 이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조리용기 하부의 공간 중 어느 것을 보열공간으로 특정하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 발명의 기재불비 여부를 본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열공간은 ‘외통의 내측에 내통이 구비되어 이중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통을 외통의 내측에 삽입하였을 때, 외통의 바닥면과 내통의 바닥면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내통 내측에 수용된 음식물이 균일하게 가열되도록 하는 것임을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측면유로는 보열공간과 연결되도록 외통과 내통 사이의 측면에 형성된 공기 통로에 해당하며, 하나 또는 다수개의 배출공이 형성되어 공기와 수증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뜻하는 것임을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진보성 부정 여부를 본다.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달리 그 구성요소 4에 보열공간(3)의 높이, 부피 및 배출공(5)의 총단면적과 직경에 대한 수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실질적인 차이(이하 ‘차이점’이라 한다)가 있다. 그런데 실험결과에 따르면 조리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제품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출공의 크기가 2mm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배출공의 개수와 관계없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배출공의 개수가 많아진다면 실질적으로 단면적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와서 가열된 공기의 배출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배출공의 개수와 관계없이 유사하다는 위 실험 결과는 일반적인 기술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며 별도의 실험결과와 뒷받침이 없는 한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보열공간에 투입된 공기의 팽창이나 수증기의 발생으로 인해 조리용기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조리용기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열 공간에서 발생한 증기를 외부로 배출하면 될 것인 바, 이는 오히려 배출공의 직경 보다는 배출공의 총 단면적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이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배출공의 직경을 변경하거나 배출공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통해 배출공의 단면적을 넓혀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보열공간의 높이와 부피의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구성요소 4 중에서 보열공간의 높이와 부피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키워드: 등록무효, 수치한정, 이중조리용기, 진보성

사건번호	2018허5723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17당3525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세척수 누출방지 기능이 구비된 칠판 물 세척 장치
선고일	2018. 12. 20.	선고결과	기각

청구범위를 부가 내지 한정하는 구성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청구범위에 기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의 선택에 달린 것으로 기재불비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 제42조 제3, 4항과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불비 여부를 본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편심축의 의미와 구성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은 해당기술분야에서 일반적이어서 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2와이퍼와 브러쉬 커버의 장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되는 기재불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재불비 여부를 본다. 원고는, 와이퍼가 판서부재의 판서면에 교호로 맞닿을 수 있게 하는 틸팅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브러쉬 커버의 구조 및 작동관계가 불명확하며,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크리닝부(30)를 이루는 세부 구성요소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1모터(31), 제1회전축(32), 브러쉬(33) 및 브러쉬 커버(34)의 결합 관계 및 상대 위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틸팅 구성은 청구범위를 부가 내지 한정하는 구성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청구범위에 기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되어 있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 2호에 위배되는 기재불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보성 부정 여부를 본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배출가이드가 칠판의 하부틀(12)과 하우징(20)의 하부판(22) 사이에 설치된 구조이며, 배출가이드를 이루는 탄성부재(52)는 지지부재(51)에서 전방 하방으로 탄성을 가지고 연장 형성되되, 상기 배출구(21)의 연직 상부에서 다시 전방 상방으로 향하는 절곡부(52a)가 형성되고 말단이 상기 칠판(10)의 하부틀(12)에 끼워져 상기 하부틀(12)의 표면과 상기 지지부재(51)의 표면을 연결하는 외면(52b)이 형성되어, 상기 외면(52b)을 따라 흐르는 세척수가 상기 하우징(20)의 배출구(21)를 통해 회수되도록 가이드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러한 배출가이드에 대한 기재나 이를 암시하는 근거가 없고 위와 같은 기술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주지관용의 기술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선행발명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배출가이드 및 탄성부재의 세부 구조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키워드: 특허, 기재불비, 세부구조, 통상의 기술자, 진보성

사건번호	2018허6016	사건명	등록무효(상)
심판번호	2015당5584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GLIATAMIN
선고일	2018. 12. 20.	선고결과	기각

GLIATAMIN과 GLIATILIN에 관하여, 상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는 뒤의 두 음절인 'TAMIN'과 'TILIN(티린)'의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은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법원은 'GLIA(글리아)'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상표들은 호칭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환송전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GLIA(글리아)' 부분이 공통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고, 상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는 뒤의 두 음절인 'TAMIN'과 'TILIN(티린)'의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은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송전 판결을 파기하는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8호 해당 여부를 본다. 여기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려면 공통되는 'GLIA(글리아)' 부분이 양 표장에 있어 요부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GLIA(글리아)'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과의 관계에서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상표들 중 뒷부분에 위치한 'TAMIN'과 'TILIN(티린)'은 조어이기는 하나 의약품 작명 시 다른 용어에 붙어 접사와 같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상표들의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GLIA(글리아)' 부분이 공통되기는 하지만, 수요자는 뒤의 두 음절인 'TAMIN'과 'TILIN(티린)'의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선등록상표들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이른바 주지상표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이를 넘어 그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8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키워드: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등록무효,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18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사건번호	2018허6023	사건명	등록무효(상)
심판번호	2015당5583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글리아타민
선고일	2018. 12. 20.	선고결과	기각

상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는 뒤의 두 음절인 '타민'과 'TILIN(티린)'의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은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 위 2018허6016. 참조

키워드: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등록무효,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18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사건번호	2018허6030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18당591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프리폼 검사장치
선고일	2018. 12. 20.	선고결과	인용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들을 결합하면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피고의 특허의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본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이송수단(40)과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2의 회전장치(40)는 각 원형 플레이트(42)와 다각 플레이트(41)로 이루어져서 회전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양 구성은 프리폼을 파지 내지 흡착하는 수단과 그 작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그러나 이 이송수단은 는 선행발명의 '구동축의 상단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로터(11)' 및 '삽입홈에 압축 스프링(16)이 구비되어 한 쌍의 그리핑 암(2)을 벌려주고 병을 파지하기 위하여 후크 형상의 그리핑 단부(3)가 형성되어 있는 다수의 그리퍼(G)'에 각각 대응되고, 그 기능들도 서로 동일하다. 그리퍼 작동 레버(65)에 관하여도 선행발명에는 '스프링 본체(14)와 결합되어 설치된 제어 캠(5a~5g)'에 관한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구성요소 1의 '밸런스 스프링(59)과 결합되어 설치되는 상부 회전편(66)'은 선행발명 1의 '스프링 본체(14)와 결합되어 설치된 제어 캠(5a~5g)'에 대응되고, 이들의 회전에 따라 그리퍼 내지 그리핑 암이 프리폼 내지 병을 파지하거나 놓게 되는 점에서 양 대응구성은 그 기능이 서로 동일하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의 파지부재가 프리폼을 파지하거나 놓는 작동 원리는 선행발명 2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양 구성은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인 '원형 플레이트(42)의 회전시 하부 회전편(67)의 일측면이 가압로드(45)에 부딪히면서 상부 회전편(66)이 회전하여 한 쌍의 암부재(52, 53)의 후단부를 서로 벌리거나 모이게 함으로써 파지부재(60, 61)가 프리폼을 파지하거나 놓게 하는 구성'은 선행발명 1에서 '로터(11)의 회전시 EP 795500 A1의 조절 레버(26)의 일측면이 EP 795500 A1의 교대볼트(27)에 부딪히면서 제어 캠(5a~5g)이 회전하여 한 쌍의 그리핑 암(1, 2)의 후단부를 서로 벌리거나 모이게 함으로써 그리핑 단부(3) 병을 파지하거나 놓게 하는 구성'과 동일하다.

결국 위 차이점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선행발명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들을 결합하면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나아가 선행발명 1은 병을 이송하기 위한 그리퍼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2는 그리퍼를 포함하여 프리폼의 결합을 검사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므로, 양 발명은 모두 프리폼 내지 병을 파지하여 이송하기 위한 그리퍼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어 결합의 곤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키워드: 프리폼 검사장치, 등록무효, 선행발명

사건번호	2018나1459	사건명	특허침해금지
제1심판결	서울중앙2017가합505242	제1심결과	기각
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셀프세차를 위한 시간 소모치를 차등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선고일	2018. 12. 20.	선고결과	항소 기각

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2 또는 이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1항 특허발명은 세차작업모드가 예비세척, 거품술, 고압헹굼, 왁스, 폼건세차, 하부세차, 샴워세차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2는 수세공정, 세제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종래기술의 기재에 의하면, 예비세척, 거품술, 고압헹굼, 왁스, 폼건세차, 하부세차, 샴워세차의 세차작업모드는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사용되고 있던 세차작업모드이고, 선행발명 2도 수세공정, 세제공정 등 복수의 세차공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종래 기술에도 물, 세제, 왁스 등 여러 세차공정이 제시되어 있고, 세차작업모드를 단순히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2의 세차공정에 출원당시에 이미 사용되고 있던 폼건세차, 하부세차, 샴워세차 등의 세차작업모드를 쉽게 추가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위 차이점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

1항 특허발명은 하나의 세차작업모드 선택시 해당 작업모드를 진행하면서 세차시간이 설정된 속도로 감산되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2는 선불요금의 잔고(殘高)가 설정된 환산율로 감산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 ①1항 특허발명은 종래 폼건세차, 하부세차, 샴워세차 등 원가가 높은 세차기능의 경우 개별적인 요금체계를 가진 별도의 코인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세차작업모드에 따라 시간 소모치를 차등화하여 하나의 셀프세차시스템에서 여러 작업모드를 함께 제공하고, 이용자가 세차시간을 작업모드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선행발명 2도 수세공정과 세제공정에 따라 '시간 대 요금 환산율' 내지 '타이머에 세팅되는 단위 시간 데이터'를 달리하여 단위 금액 당 사용할 수 있는 세차시간을 달리 정하고 있고, 이는 양 공정의 소요 경비가 다른 것을 반영하여 사용되는 세차작업모드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료 세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위 차이점과 관련하여, 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2는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다. ③이와 같은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채택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1항 특허발명은 세차작업모드별로 카운팅계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반면에 선행발명 2는 공정별로 시간 대 요금의 환산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결국 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2는 세차작업모드별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감산속도가 달라지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감산되는 것이 '시간'인지 아니면 '잔고(금액)'인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④ 선행발명 3의 명세서에서 셀프세차기에 있어서, 선불요금 및 요금의 잔고를 표시하는 대신 이를 전체 세차시간 및 잔여 세차시간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것은,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사용되던 방식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더 나은 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권리남용, 셀프세차, 소모치

사건번호	2018허1554	사건명	권리범위확인(특)
심판번호	2017당2792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셀프세차를 위한 시간 소모치를 차등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선고일	2018. 12. 20.	선고결과	인용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카운팅계수 설정단계’ 대비

1항 발명은 ‘셀프세차를 위한 시간 소모치를 차등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를 각기 다르게 설정하여 작업모드선택에 따라 디스카운팅하는 속도를 달리 카운팅하는 설정단계와, 그 설정된 속도로 세차시간을 디스카운팅하는 처리단계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에는, “세척, 거품솔, 왁스세차 작업모들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1초 단위로 세차작업시간이 디스카운팅되는 반면, 폼건세차 모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세차작업시간이 4배속으로 디스카운팅되며, 한 번 주어진 세차작업시간 도중 세차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를 설정하여 디스카운팅 속도를 카운팅하는 설정단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 위와 같이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카운팅계수 설정단계가 포함됨이 자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셀프세차를 위한 세차시간 처리방법에는, 각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설정단계가 포함될 수도 있고, 셀프세차기 내에 세차작업모드의 카운팅계수가 고정되어 카운팅계수 설정단계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별히 ‘카운팅계수 설정단계’를 중요 구성요소로 하여 보호범위를 정하고 있다. 결국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카운팅계수 설정단계’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카운팅계수 값’ 대비

특허발명은 세차작업모드에 대하여 세차작업시간이 1초 단위 몇씩 감산되는지 그 카운트계수 값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세차작업시간이 1초 단위로 감산되거나 4배속으로 감산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1초 단위 몇씩 감산되는지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셀프세차 시스템에 있어서 1초 단위 몇씩 감산되는지에 따라 감산속도가 달라져 사업주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카운팅계수 값’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키워드: 특허,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셀프세차를 위한 시간 소모치를 차등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사건번호	2018허1561	사건명	권리범위확인(특)
심판번호	2017당2765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셀프세차를 위한 시간 소모치를 차등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선고일	2018. 12. 20.	선고결과	기각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의 '세차작업모드 별로 세차시간의 감속속도를 달리하여 표시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다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①확인대상발명은 하나의 코인기에 세척, 거품솔, 왁스, 폼건세차의 세차작업모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세척, 거품솔, 왁스 작업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1초 단위 1씩 세차시간을 감산하고, 상대적으로 원가가 많이 드는 폼건세차 작업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세차시간을 4배속 빠르게 1초 단위 4씩 감산하며, 주어진 세차시간 도중 작업모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그런데 선행발명 1도 하나의 코인기에 수세공정과 세제공정 등의 복수의 공정을 제공하면서, 수세공정과 세제공정에 따라 '시간 대 요금 환산율' 내지 '타이머에 세팅되는 단위시간 데이터'를 공정마다 달리하여 단위 금액 당 사용할 수 있는 세차시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 공정의 소요 경비가 다른 것을 반영하여 공정마다 적절한 유료 세차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 1은 사용자가 공정을 변경함으로써 속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다. ③이와 같은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채택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세차작업모드 별로 '카운팅계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반면에 선행발명 1은 공정별로 '시간 대 요금'의 환산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확인대상발명은 세척의 경우 1초 단위 1씩, 폼건세차의 경우 1초 단위 4씩 카운팅계수를 설정하여 세척은 1초 마다 1씩, 폼건세차는 1초 마다 4씩 감산 처리함으로써 폼건세차가 세척보다 4배 빠르게 감산되도록 한 반면에, 선행발명 1은 수세공정의 경우 단위 금액 당 30초, 세제공정은 단위 금액 당 20초로 환산율을 설정하여 세제공정이 수세공정보다 1.5배 빠르게 감산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은 세차작업모드 별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감산속도가 달라지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감산되는 것이 '시간'인지 아니면 '잔고(금액)'인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④그런데,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 의하면 셀프세차기에 있어서, 선불요금 및 요금의 잔고를 표시하는 대신 이를 전체 세차시간 및 잔여 세차시간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것은, 종래에 이미 사용되던 방식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더 나은 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차시간 표시방식을 '잔고(금액)'로 할 것인지 '시간'으로 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⑤또한 확인대상발명의 폼건세차의 경우 감산속도를 1초 단위 4씩으로 하여 4배속 빠르게 감산되도록 하는 것은, 선행발명 1에 공정별로 소요 경비를 고려하여 감산속도를 달리 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는 점, 사업주에게 적절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그 수치한정으로 인한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소요 경비를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키워드: 특허, 자유실시기술, 셀프세차를 위한 시간 소모치를 차등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사건번호	2018허2182	사건명	권리범위확인(특)
심판번호	2017당3494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셀프세차를 위한 시간 소모치를 차등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선고일	2018. 12. 20.	선고결과	기각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의 '세차작업모드 별로 세차시간의 감속속도를 달리하여 표시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다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①확인대상발명은 하나의 코인기에 고압세차, 거품솔, 고압행굼, 왁스, 하부세차, 스노우폼의 세차작업모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고압세차, 거품솔, 고압행굼, 왁스 작업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1초 단위 1씩 세차시간을 감산하고, 상대적으로 원가가 많이 드는 하부세차, 스노우폼 작업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세차시간을 3~5배속 빠르게 즉, 1/3~1/5초 단위 1씩 감산하며, 주어진 세차시간 도중 작업모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선행발명 1도 하나의 코인기에 수세공정과 세제공정 등의 복수의 공정을 제공하면서, 수세공정과 세제공정에 따라 '시간 대 요금 환산율' 내지 '타이머에 세팅되는 단위시간 데이터'를 공정마다 달리하여 단위 금액 당 사용할 수 있는 세차시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 공정의 소요 경비가 다른 것을 반영하여 공정마다 적절한 유료 세차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 1은 사용자가 공정을 변경함으로써 속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다. ③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확인대상발명은 세차작업모드 별로 '카운팅계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반면에 선행발명 1은 공정별로 '시간 대 요금'의 환산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확인대상발명은 고압세차의 경우 1초 단위 1씩, 하부세차의 경우 1/3~1/5초 단위 1씩 카운팅계수를 설정하여 고압세차는 1초마다 1씩, 하부세차는 1/3~1/5초 마다 1씩 감산 처리함으로써 하부세차가 고압세차보다 3~5배 빠르게 감산되도록 한 반면에, 선행발명 1은 수세공정의 경우 단위 금액 당 30초, 세제공정은 단위 금액 당 20초로 환산율을 설정하여 세제공정이 수세공정보다 1.5배 빠르게 감산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은 세차작업모드 별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감산속도가 달라지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감산되는 것이 '시간'인지 아니면 '잔고(금액)'인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④그런데,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 의하면 셀프세차기에 있어서, 선불요금 및 요금의 잔고를 표시하는 대신 이를 전체 세차시간 및 잔여 세차시간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것은, 종래에 이미 사용되던 방식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더 나은 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차시간 표시방식을 '잔고(금액)'로 할 것인지 '시간'으로 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⑤또한 확인대상발명의 하부세차와 스노우폼의 경우 감산속도를 1/3~1/5초 단위 1씩으로 하여 3~5배속 빠르게 감산되도록 하는 것은, 선행발명 1에 공정별로 소요 경비를 고려하여 감산속도를 달리 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는 점사업주에게 적절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그 수치한정으로 인한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소요 경비를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키워드: 특허, 자유실시기술, 셀프세차를 위한 시간 소모치를 차등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사건번호	2018허2199	사건명	권리범위확인(특)
심판번호	2017당3495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셀프세차를 위한 시간 소모치를 차등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선고일	2018. 12. 20.	선고결과	기각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의 '세차작업모드 별로 세차시간의 감속속도를 달리하여 표시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다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①확인대상발명은 하나의 코인기에 예비세척, 거품솔, 고압행굼, 왁스, 스노우폼, 하부세차의 세차작업모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예비세척, 거품솔, 고압행굼, 왁스 작업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1초 단위 1씩 세차시간을 감산하고, 상대적으로 원가가 많이 드는 즉, 스노우폼, 하부세차 작업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세차시간을 4 내지 5배속 빠르게 스노우폼의 경우 1초 단위 4씩, 하부세차의 경우 1초 단위 5씩 감산하며, 주어진 세차시간 도중 작업모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선행발명 1도 하나의 코인기에 수세공정과 세제공정 등의 복수의 공정을 제공하면서, 수세공정과 세제공정에 따라 '시간 대 요금 환산율' 내지 '타이머에 세팅되는 단위시간 데이터'를 공정마다 달리하여 단위 금액 당 사용할 수 있는 세차시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 공정의 소요 경비가 다른 것을 반영하여 공정마다 적정한 유료 세차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 1은 사용자가 공정을 변경함으로써 속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다. ③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확인대상발명은 세차작업모드 별로 '카운팅계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반면에 선행발명 1은 공정별로 '시간 대 요금'의 환산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확인대상발명은 예비세척의 경우 1초 단위 1씩, 하부세차의 경우 1초 단위 5씩 카운팅계수를 설정하여 예비세척은 1초 마다 1씩, 하부세차는 1초 마다 5씩 감산 처리함으로써 하부세차가 예비세척보다 5배 빠르게 감산되도록 한 반면에, 선행발명 1은 수세공정의 경우 단위 금액 당 30초, 세제공정은 단위 금액 당 20초로 환산율을 설정하여 세제공정이 수세공정보다 1.5배 빠르게 감산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은 세차작업모드 별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감산속도가 달라지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감산되는 것이 '시간'인지 아니면 '잔고(금액)'인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④그런데,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 의하면 셀프세차기에 있어서, 선불요금 및 요금의 잔고를 표시하는 대신 이를 전체 세차시간 및 잔여 세차시간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것은, 종래에 이미 사용되던 방식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더 나은 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 ⑤또한 확인대상발명의 스노우폼과 하부세차의 경우 감산속도를 1초 단위 각 4, 5씩으로 하여 4 내지 5배속 빠르게 감산되도록 하는 것은, 선행발명 1에 공정별로 소요 경비를 고려하여 감산속도를 달리 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는 점, 사업주에게 적절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그 수치한정으로 인한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소요 경비를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키워드: 특허, 자유실시기술, 셀프세차를 위한 시간 소모치를 차등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사건번호	2018허2441	사건명	권리범위확인(특)
심판번호	2017당3475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셀프세차를 위한 시간 소모치를 차등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선고일	2018. 12. 20.	선고결과	기각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의 '세차작업모드 별로 세차시간의 감속속도를 달리하여 표시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다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①확인대상발명은 하나의 코인기에 예비세척, 거품솔, 왁스, 샤워세차, 스노우폼, 하부세차의 세차작업모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예비세척, 거품솔, 왁스 작업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1초 단위 1씩 세차시간을 감산하고, 상대적으로 원가가 많이 드는 샤워세차, 스노우폼, 하부세차 작업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세차시간을 3배속 빠르게, 즉 1초 단위 3씩 감산하며, 주어진 세차시간 도중 작업모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선행발명 1도 하나의 코인기에 수세공정과 세제 공정 등의 복수의 공정을 제공하면서, 수세공정과 세제공정에 따라 '시간 대 요금 환산율' 내지 '타이머에 세팅되는 단위시간 데이터'를 공정마다 달리하여 단위 금액 당 사용할 수 있는 세차시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 공정의 소요 경비가 다른 것을 반영하여 공정마다 적절한 유료 세차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 1은 사용자가 공정을 변경함으로써 속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다. ③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확인대상발명은 세차작업모드 별로 '카운팅계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반면에 선행발명 1은 공정별로 '시간 대 요금'의 환산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확인대상발명은 예비세척의 경우 1초 단위 1씩, 하부세차의 경우 1초 단위 3씩 카운팅계수를 설정하여 예비세척은 1초 마다 1씩, 하부세차는 1초 마다 3씩 감산 처리함으로써 하부세차가 예비세척보다 3배 빠르게 감산되도록 한 반면에, 선행발명 1은 수세공정의 경우 단위 금액 당 30초, 세제공정은 단위 금액 당 20초로 환산율을 설정하여 세제공정이 수세공정보다 1.5배 빠르게 감산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1은 세차작업모드 별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감산속도가 달라지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감산되는 것이 '시간'인지 아니면 '잔고(금액)'인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④그런데,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 의하면 셀프세차기에 있어서, 선불요금 및 요금의 잔고를 표시하는 대신 이를 전체 세차시간 및 잔여 세차시간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것은, 종래에 이미 사용되던 방식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더 나은 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차시간 표시방식을 '잔고(금액)'로 할 것인지 '시간'으로 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⑤또한 확인대상발명의 스노우폼과 하부세차의 경우 감산속도를 1초 단위 각 4, 5씩으로 하여 4 내지 5배속 빠르게 감산되도록 하는 것은, 선행발명 1에 공정별로 소요 경비를 고려하여 감산속도를 달리 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는 점, 사업주에게 적절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그 수치한정으로 인한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소요 경비를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키워드: 특허, 자유실시기술, 셀프세차를 위한 시간 소모치를 차등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사건번호	2018허5815	사건명	거절결정(특)
심판번호	2017원1249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신규한 균주로 알려지, 아토피성 피부염, 비염, 가려움증 등의 개선 치료 및 면역력 조절 기능을 갖는 <i>Lactobacillus plantarum</i> K-1 BR 균주
선고일	2018. 12. 20.	선고결과	기각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출원발명은 김치에서 분리동정되어 NF-kB 및 AP-1 전사인자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특징이 있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1 BR 균주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1 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균주와 선행발명의 균주는 당분석결과 L-Arabinose D-Xylose 및 Methyl-D-mannoside 의 이용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16S rRNA 분석결과 *Lactobacillus plantarum* 과의 유사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 발명의 균주가 완전히 동일한 균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균주의 분류학상의 위치가 동일하지만 균주의 세부명칭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모두 아토피성 피부염, 비염 등의 개선치료, 면역력 조절을 목적으로 장내균총을 개선시키기 위해 젖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고, 양 발명 모두 동일한 시료인 김치에서 추출되는 젖산균이며, 2014. 8. 29. 발행된 “미생물학 실험”이란 표제의 책에는 *Lactobacillus* 속을 포함하는 젖산균을 분리 동정하는 실험방법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를 종합하면, *Lactobacillus* 속 균주의 분리방법은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의 균주를 도출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1 BR 균주의 IL-4, TNF- α 의 억제, 소양행동억제 등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한지 여부에 달려 있지만, 출원발명의 실시예 3 내지 7 의 실험에 따르더라도,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K-1 BR 균주를 RBL-2H3 cells 및 수동형 피부 아낙필락시스 모델동물에 적용하였을 때 IL-4 와 TNF- α 의 발현이 억제되거나 항알러지, 항소양 반응이 나타나는 결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출원발명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키워드: 특허, 특허법 29조 2항, 진보성, 셀프세차를 *Lactobacillus plantarum* K-1 BR, 미생물 발명

사건번호	2018허6092	사건명	권리범위확인(특)
심판번호	2016당2732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근위 가공 장치
선고일	2018. 12. 20.	선고결과	인용

확인대상발명은 1항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1항 발명의 구성요소 6에서 '표면에 칼집을 내는 회전커터'는 확인대상발명의 '근위의 중앙 부위를 절개하는 회전커터'에 대응된다.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양 대응구성은 근위의 상부에 위치한 회전커터로 근위를 베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구성요소 6의 '회전커터'는 명시적으로 근위의 표면에 칼집을 내는 정도로 절개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회전커터'는 근위를 단순히 절개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회전커터에 의해 절개된 근위의 절개부위가 들러붙지 않고 벌어지게 하는 가이드 부재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확인대상발명에서도 회전커터에 의해 절개된 근위는 절개부위가 존재할 뿐이지 두 개 이상의 조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확인대상발명 도 5와 도 7에 의해서도, 확인대상발명의 회전커터에 의해 근위가 절개될 때 근위는 두 개의 조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 칼집이 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6의 '표면에 칼집을 내는 회전커터'와 확인대상발명의 '근위의 중앙 부위를 절개하는 회전커터'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항 발명의 구성요소 7의 '칼집을 따라 근위를 절개하는 고정커터'는 확인대상발명의 '회전커터에 의해 절개된 근위의 절개부위가 들러붙지 않고 벌어지게 하는 가이드 부재'에 대응된다. 구성요소 7의 '고정커터'는 칼집을 따라 근위를 절개하는 것임이 청구범위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가이드 부재'는 절개부위를 들러붙지 않게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도 2에 의하면, 가이드 부재가 금속성 소재로 구성되어 있어 근위와 같은 동물성 세포조직은 절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도 7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부재는 근위를 2개 이상의 조각으로 절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절개하는 것은 가능한 정도의 두께로 보인다. 따라서 구성요소 7의 '고정커터'와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부재'는 모두 회전커터에 의해 절개된 부위가 벌어져 있도록 유지하는 주된 기능을 가지면서 다소 얇게 절개된 부위를 가진 근위에 대해서는 그 절개 부위를 다소 확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성요소 7의 '고정커터'와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부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다.

구성요소 8의 '근위의 내부가 노출되도록 절개부위의 양측을 가압하여 벌리는 누름판'은 확인대상발명의 '근위 절개부위가 회전커터에 의한 절개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근위 절개부위를 잡아주는 안전판 및 이에 구비된 한 쌍의 가이드 턱'에 대응되고 다만, 구성요소 7의 '누름판'은 공급부에서 세척부로 체인에 근접하는 곡면의 판재형상인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안전판'은 근위 이동 방향으로 갈수록 안전판의 저면으로부터 길이가 길어지도록 돌출 형성된 가이드 턱을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모두 근위의 내부가 노출되도록 절개부위의 양측을 가압하는 작용효과를 가지므로 구성요소 8의 '누름판'과 확인대상발명의 '안전판 및 이에 구비된 가이드 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근위 가공 장치, 실질적 동일

사건번호	2017허5450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14당3331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두뇌기능 향상과 뇌신경계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펩타이드
선고일	2018. 12. 21.	선고결과	인용

일반식에 아미노산 배열을 가지는 펩타이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전체적 기재를 보면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선행발명간 결합으로 진보성이 부정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중 실시예에 실험 내용과 그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오류 및 일부 오기와 도면에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다양한 실시예를 통하여 특허발명 펩타이드의 신경세포사멸에 대한 보호 효과와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한 행동 이상 보호 효과 및 기억력 증진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해 특허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허발명이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거나 실시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특허발명의 일반식 1의 펩타이드는 발명의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효과를 확인한 4가지 펩타이드와 대비해보면, "Gly-X" 형태의 디펩타이드가 반복되는 구조로서 X위치에 동일한 종류의 아미노산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구조가 공통되고, X에 위치하는 아미노산인 Ala(알라닌), Val(발린), Tyr(티로신)은 모두 소수성 아미노산으로서 물리화학적 특성도 동일하다. 즉 특허발명의 실시예에 포함된 펩타이드들은 모두 일반식 1의 펩타이드를 대표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달리 일반식 1이 포함하고 있는 총 16가지 펩타이드 중에서 구체적으로 효과를 확인한 4종류의 펩타이드를 제외한 다른 펩타이드가 4가지 펩타이드와 동일한 활성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정도 엿볼 수 없다. 따라서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발명의 설명이 실시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일반식 1로 표현되는 펩타이드의 약리효과와 관련된 명세서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나아가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3과 청구항 7의 일반식 1의 아미노산 배열을 가지는 펩타이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청구항 7의 일반식 1은 피브로인이 23%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 Ser(세린)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브로인 가수분해물인 선행발명 3의 실크 파우더의 아미노산 조성이 청구항 7의 일반식 1에 제시되어 있는 펩타이드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각 유효성분은 펩타이드를 이루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그 배열, 펩타이드의 길이 등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가 알츠하이머 질환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치료제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선행발명 1의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 활성을 제시하는 점은 오히려 청구항 7에 이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교시에 해당하고, 선행발명 6은 위 Gly-Ala-Gly-Ala-Gly-Ala-Gly-Tyr 및 Gly-Ala-Gly-Tyr가 신경퇴행성 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개시하거나 시사하고 있지도 않으며, 선행발명 7로부터는 선행발명 3의 실크 파우더가 선행발명 7에 개시된 Gly-Val-Gly-Ala-Gly-Tyr과 동일한 펩타이드라는 점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7에는 Gly-Val-Gly-Ala-Gly-Tyr 구조를 갖는 펩타이드의 의약품도에 대해서는 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 6, 또는 7을 결합하여 특허발명의 펩타이드를 쉽게 도출할 수 없을 것이고, 펩타이드에 의한 신경퇴행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기재불비, 진보성, 펩타이드

사건번호	2017허8534	사건명	거절결정(특)
심판번호	2016원635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보체의 저해물질로 발작성 야간혈색뇨증 환자의 치료
선고일	2018. 12. 21.	선고결과	기각

빈혈 환자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선행발명에도 이미 개시되어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110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보체의 저해물질을 사용한 발작성 야간혈색뇨증(PNH) 치료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용혈성 빈혈 환자의 혈관 내 용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피로, 동통, 호흡곤란 등과 같은 관련 증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점에서 기술분야와 목적이 공통된다.

출원발명 제1항의 에쿨리주맙의 의약 용도는 발작성 야간혈색뇨증(PNH) 치료를 위한 용도로, 용혈성 빈혈 질환 및 그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인 전반적인 건강 상태, 신체 기능, 감정 기능, 인식 기능, 피로, 호흡곤란, 불면증, 발기부전 등을 치료하고, 통증 등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선행발명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고, 다만 '치료하는 동안 빈혈 상태의 환자에 있어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 부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1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1, 3에 이미 에쿨리주맙 투여 시 빈혈 환자에 대해서도 건강상태, 신체적 기능 등 삶의 질이 개선되었음이 이미 개시되어 있고 출원발명의 에쿨리주맙이 선행발명 1과 비교하여 면역원성을 개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며,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선행발명 1에 이미 개시된 이상 출원발명이 그에 비해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를 달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함으로써 '에쿨리주맙을 투여하였음에도 빈혈이 지속되는 환자에 있어서도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출원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진보성, 에쿨리주맙, 의약용도

사건번호	2018허3253	사건명	거절결정(특)
심판번호	2016원3976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스퍼터링 박막형성장치
선고일	2018. 12. 21.	선고결과	기각

안테나의 위치만이 선행발명과의 차이점인 특허발명이 선행발명간 결합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출원발명의 고주파 안테나는 권선수가 1회 미만인 선형상 도체로 이루어지는 복수 개의 코일로서 타깃지지수단의 측방가장자리에 대해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RF 유도결합 방전용 코일은 원형 코일 형상으로 스퍼터 타깃의 표면 전방 위치, 즉 스퍼터 타깃과 기판 사이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 안테나 상측의 일부가 타깃의 전방 공간에 배치되는 구조를 포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스퍼터 타깃의 전방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선행발명 1의 RF 유도결합 방전용 코일과 청구항 1의 안테나는 그 위치에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특히, 선행발명 1의 RF 유도결합 방전용 코일이나 출원발명의 도면에 제시된 고주파 안테나는 모두 타깃의 전방 공간 중에서도 타깃면의 수직 방향의 바깥쪽 공간에 형성된다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나아가 양 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종래의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장치에 의해 생성되는 플라즈마와 별도로 스퍼터 타깃의 전방 근처에서 플라즈마를 추가로 생성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의의 내지 효과가 동일하다.

한편, 선행발명 2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플라즈마 생성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선 형상의 도체로 이루어진 복수 개의 안테나가 스퍼터링 성막장치에 사용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코일 또는 선 형상의 도체로 이루어진 안테나 구조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 형성에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RF 유도 결합 방전용 코일을 선행발명 2의 선 형상 도체로 대체하는 시도를 해 볼 동기가 충분하고, 그 과정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

결국 청구항 1의 권선수가 1회 미만인 선형상 도체로 이루어지는 복수 개의 코일로서 타깃지지수단의 측방가장자리에 대해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는 고주파 안테나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 1을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진보성, 안테나

사건번호	2018허4515	사건명	등록무효(상)
심판번호	2016당2736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Cloudberry
선고일	2018. 12. 21.	선고결과	기각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 등과 전체로서 대비할 때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선등록상표·서비스표 1	선등록상표·서비스표 2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	선사용상표
BLACKBERRY	BLACKBERRY	 BlackBerry	BlackBerry

피고의 등록서비스표(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 등)와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휴대폰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의 외관을 대비하여 보면, 등록서비스표는 영단어 'Cloud'와 'berry'가 띄어쓰기 없이 나란히 쓰인 문자표장이고, 선등록상표·서비스표 1은 영어 대문자로 이루어진 단어 'BLACK'과 'BERRY'가 띄어쓰기 없이 나란히 써진 문자표장, 선등록상표·서비스표 2는 역시 영어 대문자로 이루어진 서로 글자체가 다소 상이한 'BLACK'과 'BERRY'가 띄어쓰기 없이 나란히 써진 문자표장,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은 도형 부분과 그 오른쪽으로 영어 단어 'Black'과 'Berry'가 띄어쓰기 없이 나란히 써진 문자 부분이 결합된 표장이고, 선사용상표 'BlackBerry'는 영어 단어 'Black'과 'Berry'가 띄어쓰기 없이 나란히 써진 문자표장이다. 따라서 문자 부분의 글자 구성 및 영어 대·소문자 구성, 도형의 유무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등록서비스표는 구성상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 없이 6음절의 비교적 짧게 발음되는 영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과 발음 관행에 따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각각 '구름'과 '산딸기류 열매'를 의미하는 'Cloud'와 'berry'가 결합되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나아가 지정서비스업에서 'cloud'부분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그 저장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berry' 부분 역시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베리'로만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으로 '블랙베리'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데, 여러 음절의 단어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 거래사회에서 언어관행인 점을 고려하면, '클라우드베리'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블랙베리'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인 어감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은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의 그것과 상이하고, 관념 역시 상이하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제11호의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는 상표 또는 제12호의 부정목적에 의한 사용 상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상표, 구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제 11 호, 제 12 호